

서울고등법원

제 6 행정부

판 결

사 건 2014재누275 재심청구의 소

원고(재심원고) 임그루
경북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596-3 다세대주택 에이(A)동 103호

피고(재심피고)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

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케이티
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
대표이사 황창규

재심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. 10. 10. 선고 2014재누169 판결

변 론 종 결 무변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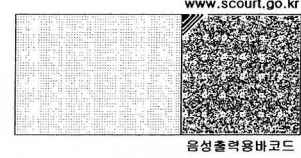
판 결 선 고 2015. 12. 23.

주 문

1.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.
2. 재심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(재심원고)가 부담한다.

재심청구취지
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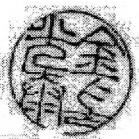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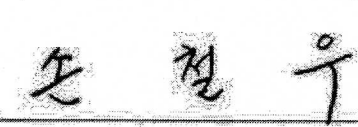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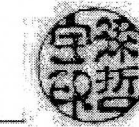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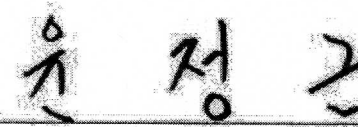

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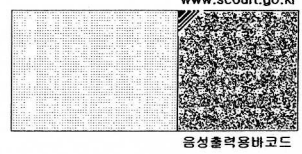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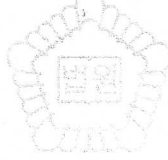
이 유

법원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같은 이유로 재심청구를 배척당하였음에도 법률상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명백한 이유를 들어 같은 내용의 재심청구를 거듭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(대법원 2005. 11. 10. 선고 2005재다303 판결 등 참조).

기록에 의하면, 원고(재심원고)는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동일하거나 유사한 이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였다가 법원으로부터 기각판결 또는 각하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배척된 그 이유를 다시 재심사유로 삼아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다.

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소권을 남용한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다.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,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의하여 변론 없이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.

재판장	판사	김광태		
	판사	손철우		
	판사	윤정근		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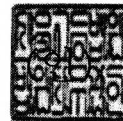
www.scourt.go.kr
음성출력용바코드

정본입니다.

2015. 12. 23.

서울고등법원

법원사무관 김진곤



판결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이 정본을 송달받은 날(발송송달의 경우에는 발송한 날)부터 2주 이내에 상소장을 민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원심법원인 이 법원(서울고등법원)에 제출하여야 합니다(민사소송법 제71조의 보조참가인의 경우에는 피참가인을 기준으로 상소기간을 계산함에 유의).

※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번호조회 메뉴를 이용하거나, 담당 재판부에 대한 문의를 통하여 이 문서 하단에 표시된 발급번호를 조회하시면, 문서의 위,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